# **Ⅳ-4** 어르신 임플란트·틀니 의료비 지원

추진부서<br/>(사업주체)보건소<br/>건강증진과<br/>(고창군)目장김정선<br/>(8709)담당자이하은<br/>(8755)추진율전체대비<br/>100%23년대비100%100%

구	분	연도별 목표	세부 추진실적		
2023	1분기		<ul><li>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승인 요청</li><li>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승인 완료</li></ul>		
	2분기		<ul> <li>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 조례 공포</li> <li>고창지역치과의사회 사업설명회</li> <li>어르신 임플란트・틀니 의료비 지원사업 향상 방안</li> <li>지역언론매체 홍보 전개</li> <li>언론방송, 홈페이지, 전광판, 현수막, 지역신문 등</li> <li>지역사회 홍보: 이장단, 유관기관, 지역대중매체</li> </ul>		
	3분기 ~ 4분기	150명	<ul> <li>사업계획 수립</li> <li>임플란트 틀니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</li> <li>대상자 선정, 시술의뢰, 의료비 집행 등</li> <li>지역사회 주민홍보 : 14개 읍 ⋅ 면 이장단 사업설명회 등</li> <li>수혜자 만족도 조사 실시</li> <li>사업 만족도 99.2%, 저작불편감소 99.6%, 경제적 도움 100%</li> <li>①경제적부담 ②식생활도움 ③심리적 안정 순으로 도움</li> <li>최종추진실적 : 의료비 지원자 269명</li> <li>의료급여 수급권자 : 68명</li> <li>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: 24명</li> <li>건강보험료 하위 50% 이하자 : 177명</li> <li>지원내용</li> <li>완전틀니 : 42명</li> <li>부분틀니 : 41명</li> <li>지대치 : 32명</li> <li>임플란트 : 193명</li> <li>※ 부분틀니, 지대치, 임플란트 중복지원가능</li> </ul>		
2024		150명			
2	025	150명			
2026		150명			

#### Ⅰ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 2023 ~ 2026

O 사업대상: 65세 이상 고령자 우선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건강보험료 하위 50% 저소득층 어르신

O 사 업 비 : 8억원(군비 100%)

O 사업내용 : 틀니(레진상·금속상, 전부·부분)와 지대치(악당 3개) 임플라트(최대 2개)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

O 근거법령

- 「지역보건법」제3조,「구강보건법」제3조, 제15조,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18조
- O 연도별 투자계획

(단위:억원)

사업비	재원별 예산					
연도	계	국비	도비	군비	기타	
총 액	8	-	-	8	-	
2023	2	-	-	2	-	
2024	2	-	-	2	_	
2025	2	-	-	2	_	
2026	2	-	-	2	_	
임기후	<del>-</del>	-	-	-	-	

## **☑ 지금까지 추진상황**

- 조례안 입법예고 및 규제,부패,성별영향평가 ······ '23. 3. ~ 5.
- O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결 ···· '23. 6. 13.

- - 이장단, 유관기관, 지역 대중매체 등
- 고창군 지역치과의사회 간담회 및 사업 설명회 ………… '23. 6. 25.
  - 어르신 임플란트 · 틀니 의료비 지원사업 향상 방안 등 논의
- 『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 조례』 공포 …… '23. 6. 27.
- O『임플란트·틀니 의료비 지원』사업 운영 ...... '23. 7. ~

구 분	지원 현황 ('23. 12. 30.기준)				
총인원	의료급여수급권자	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	건강보험하위 50%		
269명	68명 <b>(25.2%)</b>	24명 <b>(8.9%)</b>	177명 <b>(65.8%)</b>		

- - 사업 만족도 99.2%, 저작불편감소 99.6%, 경제적도움 100%
  - 의료비 지원 후 가장 큰 도움 ①경제적 부담 ②식생활 도움 ③심리적 안정

#### Ⅲ 향후 추진계획

- O 임플란트 및 틀니 의료비 집행(시술 의료기관) .....수 시

### 참고 추진실적 증빙자료 (관련 문서 등)



### 참고 추진실적 증빙자료 (조례제정)

#### 조례제정(자치법규정보시스템)

####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06.27] (제정) 2023.06.27 조례 제2718호

> 관리책임부서명: 보건소 건강증진과 관리책임전화변호: 063-560-8709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임플란트 및 틀니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"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틀니 지원사업"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저작기능 향상을 위한 임플 란트, 틀니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2. "저소득층"이란 다음 각 목의 대상을 말한다.
  - 가, "의료급여 수급권자"란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.
  - 나. "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"란「<u>국민건강보합법 시행규칙」 제14조</u>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- 다.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하위 50% 이하인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 및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험료 하위 50% 이하 납부자를 말한다.
- 3. "시술비"란 임플란트 톨니 제작 시술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.
- 4. "본인부당금"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자는 고창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령자 우선 한다.

- 1. 의료급여 수급권자
- 2. 자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
- 3.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하위 50% 이하인 사람